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54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4. 15.
3. 회 부 일 : 2026. 4.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돌봄 상황이 지원 유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담임교사·상담교사 등 학교 내 인력이 가족돌봄 청소년을 인지하더라도 이들을 공식적인 지원 대상으로 연계할 절차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발굴과 개입이 담당자 개인의 관심과 의지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가족돌봄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가족돌봄을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u>아동 학대</u>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 ----- ----- <u>아동 학대, 가족돌봄</u>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임¹⁾. 이는 기존의 교육복지, 상담 지원,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등 다양한 내용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려는 것임²⁾.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분절된 기존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사업 간 연계 및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정의 규정에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 유형을 예시하고 있음³⁾. 개정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관리할 수 있다.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2.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4.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른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과 연계된 지원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6.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7.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8.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
9.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안전관리 관련 지원
10. 복지서비스, 의료지원 등 연계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안은 여기에 ‘가족돌봄’을 추가함으로써 가족을 돌보는 학생이 학생 맞춤형통합지원의 명시적 지원 대상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 ‘가족돌봄’ 개념은 2025년 3월 25일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된 바 있음⁴⁾.

한편, 2020년 통계에서 13~18세 가족돌봄청년은 약 2만 4천여명으로 추정되는 등⁵⁾,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과 일상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학생 맞춤형통합지원 체계를 공식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인식·발굴하고 관련 지원으로 연계하는 절차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가족돌봄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학업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은 이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에 포함⁶⁾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은둔 아동·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5)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사회동향 2024」

또한, 가족돌봄을 별도의 지원 유형으로 명시할 경우, 일선 학교에서 가족돌봄 여부를 일일이 파악·관리하게 되어 복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 수행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발이 제기될 소지가 있음.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이견없음
-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의 예시를 추가한 것으로 이견 없음
- 다만, 학교의 복지·행정 등 업무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세종교육청: 신중검토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학교 복지 업무가 과중해질 우려
○ 전남교육청: 신중검토
- 학교, 교육청의 주 기능은 교육인데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복지 업무가 과중해져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움
○ 교사노조연맹: 신중검토
-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원대상이 확대될수록 복지업무가 학교에 집중될 우려
- 학교는 발굴·선정·의뢰만 하고, 교육청·전문기관·관계부처가 지원하도록 법 제11조, 제12조 개정 및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될 필요

문 의 처

02)6788-5184

6)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관리할 수 있다.

1.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2.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중 략)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